

대전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4나27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항소인 E

변론 종결 2015. 7. 8.

판결 선고 2015. 11. 25.

제 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5. 16. 선고 2012가합292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각 2,097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와 이 사건 건물의 차임 및 망 A 명의 예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각하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망 G는 망 A와 혼인하여 딸인 원고들과 아들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2) 피고는 2011.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망 A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해줄 것을 구하였는데, 그 청구의 요지는 '망 A가 81세의 고령으로 지병인 치매증상이 심각해져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에 위 법원은 2011. 10. 20. 망 A에 대하여 한정치산선고를 하였다(2011노단759).

3) 망 G는 2011. 2. 4. 사망하였고, 망 A는 2013. 12. 23.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 1) 망 G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7. 9. 17.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0. 5.26. 망 A에게 이를 증여하고 2000.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3. 22. 접수 제28386호로 '2011. 3. 21. 증여(이와 관련하여 망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A 명의의 정기예금

한편, 망 A는 2009. 9. 3.경 하나은행에 예금액 각 3,000만 원, 예치기간 각 1년으로 하는 2개의 정기예금(계좌번호 S 및 T, 이하 위 2개의 정기예금을 통틀어 '이 사건예금'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예금은 그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0. 3. 30.경피고에 의해 전액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3,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각 '피고들' 및 '피고 E'을 각 '피고'로, '피고 F'을 'F'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 A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인데, 피고는 무효인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1. 4.경부터 13개월 동안 위 건물의 임대로 인한 월 345만 원씩의 차임 합계 4,485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망 A에게 위 차임으로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 2) 또한 피고는 2010. 3. 30.경1) 이 사건 예금을 망 A의 허락 없이 무단 인출하였는바, 망 A에게 예금 합계액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설령 망 A가 피고에 게 위 예금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망 A에게 의사능력이 없어 위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여전히 피고의 반환의무가 인정된다.

3) 망 A의 사망에 따라, 피고는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위 차임 및 예금 합계 1억 485만 원(4,485만 원 + 6,000만 원)의 각 1/5인 2,970만 원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각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차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

가)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내지 7, 10, 11, 16호증, 을 제 1,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 22, 2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3, 22, 2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은 없다.

(1) 망 A(M생)는 2005년경부터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2010. 5. 26.부터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오다가 2010. 6. 3. 장기요양등급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판정을 받았다.

(2) 망 A는 위와 같은 판정을 받은 후인 2010. 9. 20.부터 2011. 4. 25.까지의 기간 중 주간에

사회복지법인 한숲복지재단 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이하 '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요양을 받아왔고, 그 무렵부터 2011. 4. 3.경까지의 기간 중 야간에 N요양원에서 요양을 받아왔다.

(3) 망 A는 주간에 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을 받을 때 수시로 화를 참지 못하여 같이 요양받는 사람들이나 요양원 직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에서 나가겠다고 하여 요양원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였던 것 외에도 별지 관찰일지 요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특이점을 보여왔다. 뿐만 아니라 망 A는 별지 관찰일지 요약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야간에 N요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특이점을 보여왔다.

(4) 한편 피고는 2011. 3. 10. 자신과 망 A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각 발급받고, 2011. 3. 15.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은 다음, 2011. 3. 21. 함께 온천을 간다면서 망 A를 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에서 데리고 나와, 같은 날 망 A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망 A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갑 제16호증의8)를 발급받은 다음, 법무사 사무실로 함께 찾아가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을 제5호증의1)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5)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망 A가 등기위임장(갑 제16호증의2)에 자필로 한자서명(A)을 하였으나 그 기재가 불분명하여("O"자 및 "P"자가 흐트러져 있는 형상이다)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피고가 한글로 망 A의 이름을 대신 써주었고, 법무사 사무실직원은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망 A의 이름 옆에 인감을 대신 날인해주었다.

(6) 그런 다음 피고는 2011. 4. 4. 망 A의 주민등록지를 자신의 종전 주소지(여수시 Q)로 옮긴 다음, 2011. 4. 25.부터 망 A와 함께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였다.

(7) 한편 망 A에 대하여 한정치산선고를 한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느단759호)에서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망 A는 치매 및 수두증 의증으로 인한 중등도의 인지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호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러는 사이에 2011. 12. 29.

장기요양등급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장기요양등급 2등급 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려진다)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1 망 A는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6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던 점,2 별지 관찰일지 요약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망 A가 앓았던 치매의 병세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망 A는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인 장기요양등급 2등급 이상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게다가 망 A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여 그것을 피고가 대필하였고, 그 인감도 피고가 법무사 직원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역시 망 A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를 구하면서 그 증상이 심각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A가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및 판단력 등의 장애증상 때문에 위와 같은 증여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써 합리적으로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 A의 의사무능력으로 인해 무효라 할 것이다.

2)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및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의 범위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가 이 사건건물로부터 발생한 차임을 취득한 것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차임 수령권자인 망 A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수령한 차임을 원고들의 상속분(각 1/5)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부당이득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는 월325만 원의 차임을 수령하고 2011. 9.경부터 2012. 4.경까지는 월 230만 원의 차임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기초로 얻은 차임 명목의 부당이득은 3,465만 원 $\{(325만 원 \times 5개월) + (230만 원 \times 8개월)\}$ 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3만 원 $(3,465만 원 \times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임차인들로부터 월 345만

원의 차임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청구 중 위 인정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1.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오면서, 건물 유지보수비로 2011. 12. 20.경 옥상 물탱크보수 작업 및 배관작업을 위하여 1,212,000원, 2013. 7.22.경 방수공사를 위하여 4,800,000원, 2014. 12. 19.경 방수공사를 위하여 4,400,000원등 총 10,41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반환으로 2015. 3. 1. U에게 2,000만 원을, 2015. 3. 30. V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가 수령한 차임에서 위 지출금 합계 60,412,000원(10,412,000원 + 5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할 금액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차임 반환을 구하는 기간이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인 이상 그 이후에 지출하였다는 비용으로 인한 피고의 공제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예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망 A가 2009. 9. 3.경 예치기간 1년의 이 사건 예금을 하였는데 피고가 그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0. 3. 30.경 위 예금 6,000만 원을 전액 인출한 사실은 앞서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A의 건강이 악화되자 원고 B, C, 피고 및 F은 2009. 11.경부터 망 A를 한 달씩 돌아가며 부양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원고 B, 원고 C, F 순서로 망 A를 부양하다 피고가 2010. 3.경부터 2010. 5.경까지

다시망 A를 부양하였는데, 피고가 2차로 망 A를 부양하기 시작한 직후에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한 점, ② 피고는 망 A가 소지하고 있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당시 망 A가 피고에게 예금 인출권한을 위임한다는 서면을 작성해 주지는 않았고, 망 A가 이 사건 예금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약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예금 인출 전에도 평소 망 G와 망 A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망인들은 대부분의 재산관리를 차남인 F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 A는 피고의 부양기간 이후에 수차례 원고 B, C 및 요양기관 담당자에게 피고가 자신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갔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망 A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망 A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예금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1,200만 원(6,000만 원 $\times$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금 6,000만 원은 피고가 망 A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예치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예금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이므로 이를 인출한 것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 명목의 부당이득 각 693만 원과 이 사건 예금무단인출로 인한 부당이득 각 1,200만 원의 합계인 각 1,893만 원 및 그 중 693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2.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귀섭, 판사 최지수, 판사 최형철

[별지]

목 록

천안시 동남구 R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슬래브, 스테이트, 천판지붕 지하1층 및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지1 215.1㎡

1층 129.54㎡

1층 80.01㎡

2층 242.7㎡

3층 226.45㎡

4층 190.4㎡

5층 129㎡ 끝.

관찰일지 요약

1. 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주간)

순번	일시	특이점
1	2010. 9. 28.	신문을 찾아 요양원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았으나 읽지 않고 찢음
2	2010. 9. 29.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먹으려 함
3	2010. 10. 7.	갑자기 "나는 도둑이 아니다"고 말함
4	2010. 10. 21.	발마사지가 끝나고 다음 사람 순서가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함
5	2010. 10. 22.	요양원 직원을 비하하는 언행을 함
6	2010. 11. 2.	체조를 하던 중 덩다면서 상의를 전부 탈의함
7	2011. 1. 13.	치매약을 바꾸고 나니 이상행동이 줄어들음
8	2011. 1. 14.	소변을 닦은 휴지를 다시 쓰려고 주머니에 넣으려 함
9	2011. 1. 18.	오후 내내 실내에서 점퍼, 목도리, 모자를 착용함
10	2011. 1. 21.	빛도 없는데 자신을 볼모로 잡아 감금하였다고 눈물을 흘림
11	2011. 1. 27.	맨손으로 소변을 닦음
12	2011. 1. 28.	부침개를 만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함
13	2011. 2. 1.	소변을 수건으로 닦음 / 최근 치매증상이 심해지고 있음
14	2011. 2. 9.	손바닥으로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하면서 망 G의 사망을 전함
15	2011. 2. 14.	화장실 쓰레기통을 뒤집음
16	2011. 2. 23.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의자를 들어 가격하려 함
17	2011. 2. 24.	하의를 2벌 착용함
18	2011. 3. 2.	요양원에 있는 동안 착용하는 이름표를 회수해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함
19	2011. 3. 8.	입을 옆으로 돌리고 무서운 표정을 짓는 것이 평소의 표정이 되어버림
20	2011. 3. 10.	난폭한 행동을 함
21	2011. 3. 11.	난폭한 행동을 하다 "도둑이 아닌데 집에 못가게 한다"고 대성통곡함
22	2011. 3. 14.	요양원 문을 열라면서 계속하여 요양원 직원들을 위협함
23	2011. 3. 24.	반찬 없이 밥만 먹으려 함
24	2011. 3. 29.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최근 기억력이 많이 저하된 것으로 보임
25	2011. 3. 31.	밥을 다 먹고서도 빈 그릇을 안고 있음
26	2011. 4. 1.	파라핀을 입에 넣으려다 제지당하고 "난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함
27	2011. 4. 6.	N요양원에서 폭력으로 강제퇴소당함
28	2011. 4. 7.	바지를 거꾸로 입음. 요양원을 많이 힘들게 함
29	2011. 4. 8.	갑자기 아무도 없는 벽에서 누가 부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가감
30	2011. 4. 12.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보고 발로 밟음
31	2011. 4. 14.	정서불안 증상을 보임
32	2011. 4. 19.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보고 발로 밟음 / 지저분한 것을 인지하지 못함
33	2011. 4. 21.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봄

2. N요양원(야간)

순번	일시	특이점
1	2011. 3. 12.	흥분하여 소리지르고 아들에게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한다"고 폭언함
2	2011. 3. 13.	다른 방을 돌아다니다가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름
3	2011. 3. 14.	거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 성기를 닦음
4	2011. 3. 15.	다른 방을 돌아다니다가 방바닥을 치면서 통곡함
5	2011. 3. 16.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함
6	2011. 3. 17.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를 속옷 속에 숨기고 나옴
7	2011. 3. 18.	다른 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가구를 파손함
8	2011. 3. 19.	딸이 다녀간 후 아들이 왔었다고 말하고, 기저귀를 말려 다시 쓴다 함
9	2011. 3. 20.	(주간, 야간) 서랍을 열어 물건을 다 꺼내고, 점심을 먹은지 정확히 모름
10	2011. 3. 21.	하의를 입은 채 소변을 보고, 옷을 갈아입히려 하니 이를 못하게 함
11	2011. 3. 22.	피고와 외출하고 돌아와서 하의를 입은 채로 소변을 봄 그날 저녁에 딸이 찾아왔는데 못알아보고 횡설수설함
12	2011. 3. 23.	소변통을 열어놓고 기저귀를 말려 다시 쓴다 함
13	2011. 3. 24.	혼자서 한참 동안 소리지르고 누군가와 이야기 하는 듯한 말을 함
14	2011. 3. 25.	새벽에 벽을 두드리고 장롱을 열었다 닫았다 함
15	2011. 3. 26.	기저귀를 뜯어놓고 다른 사람을 때리면서 큰소리로 싸움
16	2011. 3. 27.	화장실에서 신을 신지 않은 채 속옷을 벗고 하수구 위에 앉음
17	2011. 3. 29.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신을 두 켤레 가지고 옴
18	2011. 4. 2.	(오후) 서랍을 모두 열어놓아 제지당하자 요양원 직원의 목을 손톱으로 긁음
19	2011. 4. 3.	(오후) 기물을 파손하고 다른 사람을 때림

1) 원고들은 당초 소장 및 2014. 1.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서 피고의 예금 인출 일시를 2011. 3. 21.로 진술하였으나, 갑 제8호증,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착오에 의한 진술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당심 제2차 변론기일(2015. 6.

3.)에서 위 일시를 정정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예금 부분에 관한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